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21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211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나1645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09가단2005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1. 주식회사 대경정밀

2. 주식회사 버텍스

3. 주식회사 알테크놀로지

4. 주식회사 에이스테크

5. C

6. D

7. E

8. F

9.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10. G

11. H

12. I

13. 정보식품 주식회사

14. J

15. K

16. 중앙기술산업 주식회사

판결 선고 2015. 4. 23.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나16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N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하수관을 사용하는 자에 불과한 피고들은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수도법 제2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하수관이 아닌 다른 토지 부분으로 하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를 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손해는 하수관을 설치한 자가 하는 보상으로 만족되는 것이고,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226조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226조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하수관 외에 다른 배수시설이 없는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민법 제218조나 제226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만일 피고들이 민법 제22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피고들이 이미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를 배출한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하수관은 제1심 공동피고 케이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케이이엔지'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 없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케이이엔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적법한 토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케이이엔지가 원고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배상하거나 보상한 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하수관을 통하여 배수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들이 손해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만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손해보상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26조의 손해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